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사에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조회 권한 부여 등》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23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제220882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조 회 권한 부여 등(안 제34조의6 신설 등)	3

I.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제220882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희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3. 12.

다. 회 부 일 : 2025. 3.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보증을 신청하는 자의 금융정보 등의 자료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금융정보 등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율은 저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자산 등을 조회할 근거가 없어 법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만 채무자의 재산 확인이 가능해 악성 임대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신용정보와 가상자산거래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은닉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등).

3. 검토의견

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조회 권한 부여 등(안 제34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 ①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에게 금융정보등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 정보(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현행	개정안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금융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제34조의2제6항 및 제34조의6제5항-----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 제34조의6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¹⁾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업무²⁾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³⁾의 장, 가상자산사업자⁴⁾에게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

1) 「주택도시보증법」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것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4. 공사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2) 「주택도시보증법」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거래정보의 제공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 제3항),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신용
정보집중기관의 장,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파. (생략)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
자산사업자”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
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
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
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략)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
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법률」 제12조제2항7)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제2항).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에 대한 연간 채권회수 금액이 연간 대위변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그 차이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 최근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대위변제 금액이 각각 4조 6,065억원, 5조 6,040억 원에 이르렀으나, 채권회수 금액은 각각 5,409억원, 1조 3,091억원에 불과하였음.

1. ~ 5. (생략)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준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2.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특정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의 관리자 및 해당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수행자

3.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의2. 수취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

4. 제10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5.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를 한 자

6. 제10조제9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에 참여하거나 정보분석심의회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업 보증	임대보증 (법인)	변제	558	463	463	802	2,148
		회수	75	350	207	155	382
개인 보증	임대보증 (개인)	변제	-	-	188	9,719	13,944
		회수	-	-	11	166	846
	전세반환 보증	변제	4,415	5,041	9,241	35,544	39,948
		회수	2,214	2,114	2,179	5,088	11,863
합계		변제	4,973	5,504	9,892	46,065	56,040
		회수	2,289	2,464	2,397	5,409	13,091

※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3년 3조 8,598억원, 2024년 2조 5,198억원을 기록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⁸⁾되고 있는 상황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위변제 이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등을 실시⁹⁾하고, 채무관계자가 자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청구소송 등

8)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당기순이익 현황(※자료: 국토교통부)

(2020년) 2,918억원 ⇒ (2021년) 3,620억원 ⇒ (2022년) △1,126억원 ⇒ (2023년) △38,598억원
⇒ (2024년) △25,198억원

9) 「채권관리규정」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제10조(재산조사) ①영업부서장은 채무관계자의 담보를 통해 채권의 전액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채권보전조치) ①영업부서장은 재산조사결과 채무관계자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실익가액, 환가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한 다음 경매¹⁰⁾를 통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런데, 악성임대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교묘해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산조사로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재산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절차¹¹⁾를 거쳐

10) 전세반환금보증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집행절차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임.

「채권관리규정」(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제27조(강제집행) ①영업부서장은 담보권실행으로도 채권의 완전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채무관계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강제집행은 지급명령 또는 청구소송 등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즉시 압류 등 법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저당권등 선순위채권 유무
2. 압류금지재산 여부
3. 채권회수가능재산 유무

「민사집행법」

제78조(집행방법)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11)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나, 재산명시절차는 신청부터 완료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¹²⁾되어, 그 사이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처럼,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정보·신용정보와 가상자산거래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임.

그런데, 개정안은 금융정보, 신용정보, 가상재산거래정보의 제공 대한 현행 관련 법령과의 관계¹³⁾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금융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¹⁴⁾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12)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신청 → 신청에 대한 재판 → 채무자의 이의신청 → 재산명시기일의 실시(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됨.

13)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54

- 체계정당성의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같은 법규범 내 또는 다른 법규범과의 관계에서 법규범의 구조·내용이 서로 모순·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처럼 규범 상호 간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거래 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법원의 제출명령·조세에 관한 사항·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음.

그리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¹⁵⁾은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 다. (생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과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 마. (생략)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 나. (생략)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 나. (생략)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동의 없는 금융정보의 제공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서로 모순·저촉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참고로,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증을 신청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도록 규정¹⁵⁾하고 있음.

1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16)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① · ② (생략)

③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생략)

②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 신용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17)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의 동의절차 없이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18)는 신용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9의4. (생략)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충돌될 여지는 적다고 생각됨.

다음,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일반법으로 2024년 7월 제정(2024. 7. 19.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020년 3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¹⁹⁾(2021. 3. 25. 시행)하였음.

그런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3호)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⑨(생략)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르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²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검사 및 조사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²¹⁾에 따라 한국은행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²²⁾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감독 및 검사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임.

2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2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① ~ ⑥ (생략)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감독·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검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의 정보나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 파. (생략)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일반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이 개별법에 규정되는 경우 법체계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정보 제공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함.

첫째, 금융정보, 신용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인 금융정보, 신용정보 제공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예외 사유 확대를 통한 금융정보,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은 금융거래 비밀보장, 신용정보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상 금전채권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예외 확대는 부적절함.

둘째, 가상자산거래정보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대상 정보²³⁾는 가상자산

23) 비밀보장대상 정보는 금융회사등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고한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 및 이를 분석한 정보,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의심거래정보 등으로,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님.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사적자치 원칙 훼손, 과잉권한 부여 등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법무부는 민사상 채권자 지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명령 없이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게 하는 것은 금융거래 등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개정안은 ①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금융정보, 신용정보, 가상재산거래정보의 제공에 대한 현행 관련 법령과 개정안과의 관계, ③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590

전신송금시 수취금융회사가 송신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을 의미함.